

우루과이 여행자 통관정보

2022년 9월 현재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술	○ 증류주 6 리터	
담배	○ 4 포	
향수		
면세한도금액 (일반면세기준)	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, 개인 소지품 외에 ○ 월 1회 : 미화 150불(육로로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칠레, 파라과이,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여행자) ○ 월 1회 : 미화 300불(항공 또는 선편으로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칠레, 파라과이,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여행자) ○ 연 1회 : 미화 500불(항공 또는 선편으로 기타 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자)	○ 미성년자는 동 금액의 50%만 적용 ○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% 과세
외국환신고	○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 (내국인, 거주자, 여행자 등)을 현금, 금, 여행자수표, 귀금속으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, 세관에 신고해야 함	
의약품	○ 장기 복용이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은 허용되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지참해야 함	
식품	○ 포장 용기에 담겨져 밀폐되고 제조업체 및 원산지가 기재된 제품은 선별 통관	
반입불허품목	○ 식물성 물품, 축산물품, 유제품, 마약, 가연물, 한약재, 음란물, 곡식, 씨앗 등 ○ 애완동물(개, 고양이)의 경우 메르코수르, 아메리카, 유럽에서 출발하는 동물은 반입 시 출발국의 검역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면 되나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사전 반입 허가신청이 필요함	
기타 유의사항	○ 여행자 소지품 중 여행 중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상업 용품인 것으로 세관에서 판단할 경우,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 ○ 구제역 방지 차원에서 식물·축산품과 관련된 물품은 통관이 안됨	

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

연 락 처 : +598 2628 9374~5

이 메 일 : koemur@mofa.go.kr

홈페이지 : overseas.mofa.go.kr/uy-ko/index.do

페이스북 : www.facebook.com/embajada.corea.uy

본 자료는 우루과이를 방문/거주하는 우리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재국의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(번역)한 참고용 자료로, 일부 사용용어는 법률적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